

「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8월 27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8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9월 5일

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사회복지국장 황 은 채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를 확산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적용대상 : 국가유공자(안 제2조)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

- 설치장소 : 구미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, 공공시설(안 제4조)
 - 「주차장법」의 노외·부설주차장, 다중이용시설은 설치 권고
- 설치기준 : 주차면수 100대 이상인 경우 총 대수의 100분의 이하(안 제5조)
 - 주차구역 바닥면에 별도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 3항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,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, 시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함.
- 국가보훈부에서도 지난해 ‘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’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,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음.

- 집행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인식을 향상하여,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구역을 차질 없이 설치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- 또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, 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차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,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연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